

#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-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간 농업관측 및 정보 교류협력 협약서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관측 및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 농업관측 및 농산물 수급 등의 정보 교류에 관한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농업관측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한다.

1. 농업관측 자료수집·조사, 관측 및 분석기법 등의 정보 공유
2. 관측정보 확산을 위한 농업전망, 세미나, 토론회 등 개최
3. 농업관측을 활용한 기술·경영지도와 현장컨설팅 활성화
4. 기타 농가 경영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비밀유지)** ①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 
② 양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4조(비용부담) 협력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양 기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·분담한다.

제5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다. 단, 만기일 3개월 이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해지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, 1년 단위로 그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협의 조정) 본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한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2월 22일

**KREI**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 
농업관측본부

본부장 황 의식

황 의식.

**Jeju**

제주특별자치도  
농업기술원

원장 강성근

강성근